

고 시

●산림청고시 제2018-73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6일

산림청장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1. 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수입신고 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검사기관에서 서류검사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 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서류검사 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상품의 분류체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3에 따른 원목 또는 목재제품의 세계 공용 상품분류체계(Harmonized System Code)는 다음과 같다.

1. 원목(HS4403)
2. 제재목(HS4407)
3. 방부목재(HS4407)
4. 난연목재(HS4407)
5. 집성재(HS4407)
6. 합판(HS4412)
7. 목재펠릿(HS4401.31)

제3조(서류의 세부기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이 서류검사를 하는 경우 합법벌채 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2. 합법벌채 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
 - 가.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에 의해 발급된 산림경영인증(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임산물제품인증(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을 포함한다) 서류

나. PEFC(Programme for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에 의해 발급된 산림경영인증(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서류 또는 임산물제품인증(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서류

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제 인증체계(ISO 17065 체계에 따른 제3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

가. 수출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4.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

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운영하는 「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동반자 협약」(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다.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명세서 등의 확인서류

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마.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서류제출의 요건) 수입업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업자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수입 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2018년 10월 1일 이전에 선적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원본(복사본을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수출국의 자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8. 8.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가별 PEFC 상호인정 등록 인증제도

(2017. 9월 기준)

구분	국가	산림인증제도	FM(ha)	CoC(건)
1	아르헨티나	Argentine Forest Certification System(CERFOAR)	22,524	10
2	브라질	Brazilian Forest Certification Programme (CERFLOR)	3,072,628	65
3	칠레	Chile Forest Certification Corporation(CERTFOR)	1,908,712	63
4	캐나다	PEFC Canada, Suatainable Forestry Initiative (SFI)	130,937,328	188
5	미국	PEFC United States: American Tree Farm System (ATFS), Sustainable Forestry Initiative (SFI)	33,502,630	270
6	우루과이	Sociedad de Productores Forestales del Uruguay	619,168	3
7	호주	Australian Forestry Standard	23,832,280	196
8	중국	China Forest Certification Council(CFCC)	5,709,026	289
9	일본	Sustainable Green Ecosystem Council(SGEC)	679,129	700
10	인도네시아	Indonesian Forestry Certification Cooperation(IFCC)	3,491,040	32
11	말레이시아	Malaysian Timber Certification Council (MTCC)	4,119,249	359
12	뉴질랜드	New Zealand Forest Certification Association Inc.(NZFCA)	434,185	28
13	오스트리아	PEFC Austria	3,081,518	470
14	벨라루스	Belarusian Association of Forest Certification	8,710,234	9
15	벨기에	PEFC Belgium	299,500	303
16	체코	PEFC CzechRepublic	1,811,407	212
17	덴마크	PEFC Denmark	264,411	100
18	에스토니아	Estonian Forest Certification Council	1,174,511	71
19	핀란드	PEFC Finland	17,660,520	232
20	프랑스	PEFC France	8,211,435	2,033
21	독일	PEFC Germany	7,398,828	1,708
22	헝가리*	Hungarian Forest Certification Non-profit Ltd.	-	21
23	아일랜드	PEFC Ireland	376,108	41
24	이탈리아	PEFC Italy	828,952	711
25	라트비아	PEFC Latvia	1,700,889	49
26	룩셈부르크	PEFC Luxembourg	34,195	18
27	네덜란드	PEFC Netherlands	-	454
28	노르웨이	PEFC Norway	7,380,750	75
29	폴란드	PEFC Poland	7,252,197	172
30	포르투갈	PEFC Portugal	256,369	133
31	러시아	PEFC Russia	12,875,382	30
32	슬로바키아	Slovak Forest Certification Association	1,230,971	79
33	슬로베니아	Institute for Forest Certification	49,204	42
34	스페인	PEFC Spain	2,108,257	880
35	스웨덴	PEFC Sweden	11,549,700	212
36	영국	PEFC UK	1,409,761	1,180
37	스위스	PEFC Switzerland	208,949	51
38	루마니아*	PEFC Romania	-	24
39	가봉*	PEFC Gabon	-	-

* 2016년 상호인정 등록국가는 FM면적 적용 안됨

※ 출처 : www.pefc.org (PEFC Global Statistics, SFM & CoC Certification, Sep 2017)

목재합법성 확인서

■ 수급자 :

품 명	단 위	수 량	수 종	원산지
ex) 합판	m ³	50	라디에타파인(%)	뉴질랜드
			유칼립투스(%)	인도네시아
			포플러(%)	중국

※ 원자재의 원산지가 여러 나라인 경우에는 원산국 모두를 기재하며, 수종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모든 수종을 기재함

상기 내용은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까지 수급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위 물품은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이며, 한국 정부에서 목재합법성에 대한 현지조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경우 협조에 응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상호명:

대표자:

연락처: